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규정〉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18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2명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인격권의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인격권 규정의 필요성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¹⁾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52면

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을 말함²⁾.

우리나라의 민법은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은 제10조에 따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³⁾ 및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⁴⁾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별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⁵⁾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격권의 실현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한 바 있고,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⁶⁾하면서,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

2) 안문희 등 2인, 법무부 연구보고서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별적 인격권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초상·성명·음성·대화 등과 같이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권리를 말하고, 일반적 인격권은 이들 개별적 인격권의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인격권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됨.

3)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 등은 보도내용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⁷⁾고 그 경계를 규정한 바 있음.

판례는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민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의 침해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⁸⁾에 따른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을 추정하고⁹⁾, 제751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제764조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명예회복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후적 구제방안 외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인격권에 적용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금지청구권)에 기초한 침해행위의 제거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¹⁰⁾하고 있음.

이처럼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가치에 대한

7)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고철웅,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소고-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민사법학, 2022.

대법원 2006.10.13. 선고2004다16280 판결.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인격권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을 추정하며 그 추정을 배제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한다는 논리를 취하였다.

10) 안문희 등 2인, 법무부 연구보고서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통설과 판례는 인격권이 절대권이라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인격권에 적용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기초한 침해행위의 제거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오고 있으며, 이를 실무에서는 금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¹¹⁾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민법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 된 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격권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모든 표현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화하여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로 만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존재함. 예컨대,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사회활동 속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정보가 존재함에도 그 동의 없는 사용만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음.

또한, 유력인에 대한 언론보도, 미투 운동,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학교폭력, 폭언 갑질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며 가해 당사자 및 사회구성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고발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11) 안문희 등 2인, 법무부 연구보고서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2014년 개정시안 과정에서도...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이미 개별 법령이나 판례를 통하여 인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민법에 선언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거나, 인격권에 관한 조문화가 오히려 현재 판례를 통해 융통성 있게 인정되는 인격권의 보호 범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격권이 사법질서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민법에서도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개정시안에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있음¹²⁾.

따라서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민법에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보호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인격권에 관한 입법경과

인격권을 규정하려는 민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지속해서 국회에 제출되었음. 법무부는 2004년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¹³⁾(안 제1조의2 신설)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음.

2013년에도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민법」 개정안¹⁴⁾(안 제766조의2 신설)이 최원식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12) 오픈넷, 2022.4.12.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13) 안 제1조의2 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14) 안 제766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766조의3(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안 제766조의4(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이후 인격권은 2014년 법무부에서 준비한 민법개정시안¹⁵⁾(안 제3조의 2 신설)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인 제21대 국회에서도 법무부는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인격권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인격권 규정 조문의 위치

개정안은 제3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민법의 체계상 제1편 총칙 제2장 인(人)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뒤에 위치하게 됨.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제766조의3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청구권을 행사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제1항의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안 제766조의5(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권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권리는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한다.

④ 제1항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66조의3을 준용한다.

15) 안 제3조의2(인격권)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민법의 체계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조 법원 제2조 신의성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 성년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제2편 물건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이하 생략)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이하 생략)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3조 준용규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이하 생략)	

인격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되는 재산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권 또는 상속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편부터 제5편까지의 내용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격권 규정은 제1편 총칙에 규정하거나 제6편 인격권 편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채권각칙(불법행위)에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채권각칙(불법행위) 부분에 인격권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격권이 반드시 불법행위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제6편 인격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편(編)을 추가할 만큼 인격권에 대해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¹⁶⁾.

개정안은 제1편 총칙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제3조의 다음 조문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제1편 총칙 제2장 인(人) 제1절 능력의 부분에 인격권을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적 관점에서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법무부, 2017
안문희 등 2인, 법무부 연구보고서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에서 재인용

(2) 인격권의 내용

개정안은 인격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인격권의 구성요소로 언급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격권의 구체적인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¹⁷⁾에서 규정한 인격권의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는 문구를 통해 열거되지 않은 인격적 이익도 동 규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격권”의 내용	민법 개정안에 따른 “인격권”의 내용
-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肖像), 성명, 음성, -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	-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

17)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판례는 인격권의 침해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¹⁸⁾에 따른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을 추정하고¹⁹⁾, 제751조²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제764조²¹⁾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명예회복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도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바가 있으나, 그 근거나 요건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제3조의2제2항과 같이 인격권 침해를 제거하거나 인격권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18)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 고철웅,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소고-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민사법학, 2022.

대법원 2006.10.13. 선고2004다16280 판결.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조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인격권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을 추정하며 그 추정을 배제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한다는 논리를 취하였다.

20)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1)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4